

일 시 : 2020. 2. 26(수)11:00
장 소 : 계산동 「고기가마니」

제 15 차 정 기 총 회

 계 양 문 화 원

목 차

I. 회 순	3
II. 전차회의록	7
III. 감사보고	13
IV. 부의안건	17
• 제1호 의안 : 2019년도 사업 및 결산(안)	
• 제2호 의안 : 2020년도 사업 및 예산(안)	
• 제3호 의안 : 임원(이사) 선임의 건	
V. 참고자료	55
• 문화원 현황(일반현황, 임원명단, 동아리현황)	
•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 인천광역시 계양문화원육성 및 지원에관한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운영및 지원에관한조례	
• 계양문화원 정관	
• 계양문화원 회원관리규정	

I. 회 순

제15차 정기총회 회순

○ 개 회

○ 성 원 보 고

○ 개 회 선 언

○ 의 장 인 사

○ 전차회의록 접수

○ 감 사 보 고

○ 의 안 심 의

제1호 의안 : 2019년도 사업 및 결산(안)

제2호 의안 : 2020년도 사업 및 예산(안)

제3호 의안 : 임원(이사) 선임의 건

○ 기 타 토 의

○ 폐 회

Ⅱ. 전차회의록

계양문화원 제14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2019. 2. 20(수) 11:00			
장 소	계양구청 6층 대회의실			
출석인원	168명(참석116명, 위임 52명)			
심의안건	<p>제1호 의안 : 2018년도 사업 및 결산(안) - 원안가결</p> <p>제2호 의안 :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안) - 원안가결</p> <p>제3호 의안 : 임원(감사, 이사) 선임의 건 - 원안가결</p>			
회의결과	별첨 회의록 1부			
서 명 날 인	직 위	성 명	날 인	비 고
	원 장	이 찬 용		
	부원장	신 선 호		
	부원장	이 문 선	위임	

제14차 2019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I. 개 요

- 일 시 : 2019. 2. 20(수) 11:00
- 장 소 : 계양구청 6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36명중 출석 168명(참석 116명, 위임 52명), 불참68명
- 회의진행 :
 - 개회식: 개회, 내빈소개, 국민의례, 개회사, 내빈축사(구청장)
 - 본회의: 성원보고, 개회선언, 의장인사, 전차회의록 보고, 감사보고, 안건심의, 폐회

II. 본회의 개최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11:20 사무국장이 총회 성원보고(회원236명중 참석116명, 위임52명으로 168명 출석)를 하고 의장(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제14차 2019도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2. 의장(문화원장)개회 인사

오늘 총회에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전임 원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를 드림.

계양은 타지역에 비해 많은 문화유적이 있음에도 구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 16년도부터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하여 14명을 위촉하였음. 올해부터는 계양규레이터, 돌레길 및 사색길 해설사를 문화원에서 통합운영하게 되어 관내 도서관 및 학교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역사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도호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구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속히 부평도호부 복원에 노력하고자 함. 회원여러분께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림.

3. 전차회의록 접수 및 승인

의 장: 다음은 전차회의록 접수로 사무국장에게 회의록 낭독을 주문함

이임효: 제13차 정기총회 전차 회의록은 시간절약을 위해 회의자료에 회의록으로 가름하자고 요청하자 일동 동의를 제청함.

의 장: 전차회의록을 총회자료 회의록으로 가름하여 낭독을 생략하는데 대하여 일동 동의하므로 전차회의록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4. 감사보고

의 장: 다음은 감사보고 순서로 권이환 감사와 이임효 감사께서 2018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권이환 감사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람.

감사(권이환): 2018년도 감사보고(자료17-18쪽)자료를 낭독함

의 장: 감사보고에 대하여 질문사항을 묻자 참석자 모두 없다고 제청함

5. 안건심의

▶ 제1호 의안 : 2018년도 사업 및 결산(안)

의 장: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제안설명을 주문함

사무국장: 제안설명(회의자료 21~34쪽) 2018년도 사업실적으로 자체사업, 보조금 사업, 공모사업 설명 및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함

의 장: 제1호 안건에 대한 질의 여부를 묻자 일동 이의 없음을 제청하여 원안 가결을 선포함

▶ 제2호 의안 :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안)

의 장: 제2호 안건을 상정함

사무국장: 회의자료(35쪽~49쪽)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안 설명

의 장: 제2호 안건에 대한 질의 여부를 묻자 이창규 전임원장께서 질문을 함

이창규 전임원장: 회의자료 40쪽 계양큐레이터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기 바람.

의 장: 큐레이터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계양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양성하여 문화유산 해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전임원장: 추가적으로 설명 문구를 표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 장: 제2호 의안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해 묻자, 질문 없다고 하므로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함.

▶ 제3호 의안 : 임원(이사,감사)선임의 건

의 장: 제3호 안건을 상정함.

사무국장: 제안설명(50쪽~52쪽)

- 임원선임은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 감사 임기가 19.4.14일 만료예정으로 연임에 대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
감사 연임자: 권이환 감사, 이임효 감사
- 이사 4명이 19.1.2부로 사퇴함: 전봉운·강현옥·이한구·박정희 이사
- 임원(이사) 사퇴에 따른 이사 3명을 선임하고자 총회승인을 얻고자함.

이사후보자: 홍군선, 조희경, 백하은 이사 후보자 약력을 소개

의 장: 임원선임은 총회 승인사항으로 감사 및 이사선임에 대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승인을 요청함.

권이환 감사, 이임효 감사 2명의 연임에 대하여 묻자 모두 동의한다고 제청함.

이사 후보자 홍군선, 조희경, 백하은 3명에 대하여 이사선임 승인여부를 묻자 일동 동의를 제청하여 임원(감사,이사)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함

6. 기타토의사항

의 장: 기타 문화원에 건의 또는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일동 없다고 제창 하므로 본 회의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대해 동의를 구하자 이의 없다고 제창함.

III. 폐 회

의 장(원장): 이상으로 계양문화원 제14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함.

Ⅲ. 감사 보고

감 사 보 고 서

본 감사는 계양문화원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거 2019년도 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20년 1월 10일 계양문화원 사무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세입·세출 총괄

2019년도 문화원 사업 및 세입·세출 사항을 감사한 결과 세입액 1,381,304,255원, 세출액 997,043,660원, 이월액(잔액) 384,260,595원(기금포함)이 결산안의 내용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 세입·세출결산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액①	세입액②	세출액③	잔 액②-③
계	1,394,087,000	1,381,304,255	997,043,660	384,260,595
보 조 금	999,112,000	980,938,800	980,938,800	
문화원사업(자체)	394,975,000	400,365,455	16,104,860	384,260,595

2. 문화원운영실태

- 문화원은 계양구청 청사에 사무국 사무실(87.34㎡)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근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음. 문화진흥법시행령 제4조(시설기준)에 문화원의 시설기준은 사무실을 포함한 300㎡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공간과 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

- 문화원의 회원수는 16년도 109명, 17년도 143명, 18년도 182명, 19년도 19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각종 문화원 사업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발전적이라고 하겠음.
- 주요사업으로는 향토지발간, 문화해설사운영, 계양학학습길을 운영 하였으며,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청소년의 문화재체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교설립 후 최초로 개최한 향교달빛 음악회는 구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음. 또한 2020년도에도 4,2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년차 추진함으로써 문화원의 대표사업으로 정착하고 있음.

3. 권고사항

문화원의 목적사업인 전통문화계승과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서는 문화원진흥법에 규정한 공간 확보와 경상경비를 비롯한 사업비 예산확충과 사무국 인력충원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10.

감사 권 이 환 

감사 이 임 효 

IV. 의안심의

제1호 의안 : 2019년도 사업 및 결산(안)

제2호 의안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3호 의안 : 임원(이사)선임 건

의안 번호	제 1 호
----------	-------

2019년도 사업 및 결산(안)

1. 제안자: 계양문화원장

2. 제안일자: 2020. 2. 26

3. 제안사유

- 계양문화원 정관 제24조(총회의 기능)
- 제4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의결주문

- 계양문화원 2019년도 사업 및 결산(안)을 별첨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5. 내용: 별첨

I . 2019년도 사업 및 결산(안)

1. 2019년도 사업실적

○ 자체사업 실적

사업명	추진내용
총회 및 이사회	<p>□ 제14차 정기총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9. 2. 20 (수) 11:00 ○ 장 소 : 계양구청 6층 대회의실 ○ 참여인원 : 168명(참석 116명, 위임52명) ○ 심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안 : 2018년도 사업 및 예산결산(안) : 원안가결 제2호안 :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안) : 원안가결 제3호안 : 임원(이사,감사)선임의 건: 원안가결
	<p>□ 이사회 개최</p> <p>【제1차 이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일시 : 2019. 1. 23(수) 11:00 ○ 장 소 : 계양구청 평생학습관 배움터 2실 ○ 출석인원 : 임원13명 (이사: 출석7명 위임5명, 감사1명) ○ 심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안 : 2018년도 사업 및 예산결산(안) : 원안가결 제2호안 :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안) : 원안가결 제3호안 : 제14차 정기총회 소집 건 : 원안가결 제4호안 : 총회임원(이사,감사)선임 부의건: 원안가결 제5호안 : 문화원사무국장 임기연장의건: 원안가결 <p>【제2차 이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일시 : 2019. 3. 5(화) 11:00 ○ 장 소 : 계양구청 평생학습관 배움터 2실 ○ 출석인원 : 19명(이사:15명 위임3명, 감사1명) ○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문화원 임원(이사) 선임장 수여 - 문화원사업 보고 - 기타토의 (문화원 임원 탐방계획에 대한 토의)

사업명	추진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총회 및 이사회</p>	<p>【제3차 이사회】 ○ 회의일시 : 2019. 7. 16(화) 11:00 ○ 장 소 : 계양구청 7층 신비홀 ○ 참석인원 : 17명(이사: 참석13명 위임3명, 감사1명) ○ 심의안건 제1호안 : 임원(이사)선임 부의건 : 원안가결 제2호안 :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p> <p>【제4차 이사회】 ○ 회의일시 : 2019. 9. 24(화) 11:00 ○ 장 소 : 계양구청 6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7명(이사: 참석11명 위임5명, 감사1명) ○ 보고사항 : 문화원 문화사업 추진사항 보고</p> <p>【제5차 이사회】 ○ 회의일시 : 2019.11. 6(수) 10:30 ○ 장 소 : 계양구청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5명(이사: 참석12명 위임2명, 감사1명) ○ 안건심의 : 제1호의안 계양문화원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 보고사항 : 19년도 사업계획(안) 보고</p> <p>【임원간담회】 : 5회 ○ 개최일 : 4.9/ 6.18/ 8.27/ 10.23/ 12.27</p>																																			
<p style="text-align: center;">인력채용</p>	<p><input type="checkbox"/> 19년도 문화원 인력채용 ○대상 : 문화원 사무국, 구립도서관,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채용인원 : 5회 /6명 (도서관 3명, 여성회관 2명, 새일센터 1명) ○채용절차 : 모집공고, 원서접수, 심사위원구성, 서류심사, 면접시험, 조회, 채용</p> <table border="1" data-bbox="411 1550 1385 1809">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1회(6월)</th> <th>2회(7월)</th> <th>3회(8월)</th> <th>4회(11월)</th> <th>5회(12월)</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6</td> <td>1</td> <td>1</td> <td>1</td> <td>1</td> <td>2</td> </tr> <tr> <td>구립도서관</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d>2</td> </tr> <tr> <td>여성회관</td> <td>2</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새일센터</td> <td>1</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r> </tbody> </table> <p>○채용사유 : 정년퇴직 및 사직에 따른 인력충원</p>	구 분	계	1회(6월)	2회(7월)	3회(8월)	4회(11월)	5회(12월)	계	6	1	1	1	1	2	구립도서관	3		1			2	여성회관	2	1		1			새일센터	1				1	
구 분	계	1회(6월)	2회(7월)	3회(8월)	4회(11월)	5회(12월)																														
계	6	1	1	1	1	2																														
구립도서관	3		1			2																														
여성회관	2	1		1																																
새일센터	1				1																															

사업명	추진내용
계양큐레이터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9. 4. 29 ~ 8. 21 / 2019. 12. 3 ~ 12.19 ○ 목적 : 계양 문화유산 전문 해설사 양성 ○ 장소 : 계양구 평생학습관 및 문화유산 현장 ○ 교육인원 : 계양구민 38명 ○ 교육시간 : 94시간(34회) / 매주 월·수요일 3시간, 화·목 2시간 ○ 교육내용 : 계양을 중심으로 인천역사 및 문화유산 현장교육 계양의 지명유래 및 인문·자연 환경 ○ 사업비 : 9,596천원 ○ 수료인원 : 17명 (해설사 위촉 11명) ○ 해설활동 : 관내 문화유적지 /10인 이상 단체 -부평도호부, 부평향교, 계양산성,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영신군 묘 등
문화강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2019. 5. 17 ~ 10. 11 (20주) ○ 교육장소 : 계양구 평생학습관 ○ 교육인원 : 46명 ○ 교육시간 : 20강/40시간 (매주 금 10:00~ 12:00, 2시간) ○ 내용 : 계양구 문화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전문가 육성 ○ 교육강사 : 최유림(스텝아트 대표), 주용철 (손 스튜디오 대표) ○ 사업비 : 3,000천원
계양역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9. 6. 28 ~ 12. 18 ○ 목적 : 문화유산을 직접 만들어보고 배우고 체험하여 지역 역사와 향토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도록 함 ○ 장소 : 관내 초등학교 및 구립도서관 ○ 교육인원 : 관내 청소년 300여명 (효성남초 3학년 5회, 작전도서관 4회, 효성도서관 4회 서운도서관 2회, 동양도서관 2회) ○ 교육내용 : 지역의 역사에 대한 강의와 계양 문화유산 모형을 직접 만드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구활용 : 계양산성, 부평도호부, 부평향교3D 입체퍼즐 ○ 사업비 : 8,080천원

사업명	추진내용
<p>문화유적 탐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9. 4. 23 / 5. 3 / 7. 25 / 11. 1 ○ 목적 : 국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답사함으로써 우리역사 문화에 대해 직접 느끼고 문화원 회원들 간의 교류의 장과 역사문화 중심지로서 계양을 인식제고 ○ 장소 : 전북 익산, 충북 보은 (경기 남양주, 충남 논산) ○ 참여인원 : 계양문화원 회원 200명 ○ 사업비 : 1,370천원
<p>계양향토사료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9. 1. ~ 12. ○ 목적 : 계양의 과거 모습과 생활사의 변화를 수집 및 기록화 ○ 대상 : 계산동 지역의 옛 모습, 도시변화, 도시경관, 학교 및 모임, 구술 자서전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집필 작업, 기록 사진 촬영, 지역 주민 구술면담 - 마을의 변화모습과 이야기 등 체계적 기록 정리 - 계산동 마을이야기 책자 발간 (300부 / 250p) ○ 사업비 : 10,610천원
<p>문화동아리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9. 4. 25 ~ 11. 13 ○ 목적: 문화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 참여기회 제공 ○ 대상: 계양문화원 동아리회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재작품 전시회 : 2019. 4. 25~5. 1 / 계양아트갤러리 - 사진동아리 작품전시회 : 2019. 10. 24~30 / 계양아트갤러리 - 문학회 시화전 : 2019. 10. 24~11. 1 / 계양구 평생학습관 ○ 사업비: 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재전시 2,000천원, 사진전시 1,000천원, 시화전 1,000천원
<p>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영화관람(항거: 유관순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2019.3.12.(화) 14:00 - 장 소: 계양CGV - 대 상: 작전중학교 전교생 - 관람인원: 570명(학생522명, 교사43명,인솔자 5명) ○ 영화감상문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자 시상: 24명(최우수3, 우수6,장려15) ※우수작 계양산 메아리 게재(구청소식지) ○ 사업비: 3,633천원(문화원 2,933천원, 학교700천원)

○ 공모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생생문화재 사업	<p>○ 사업명 : 출발! 生生 계양여행 <3色매력 우리고을></p> <p>○ 사업기간 : 2019. 3. ~ 11.</p> <p>○ 주 관 : 계양문화원 (후원: 문화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p> <p>○ 장 소 : 부평도호부, 부평향교, 계양산성</p> <p>○ 참여인원 : 893명(관내 5개 학교 초등학교생, 가족단위 참가자)</p> <p>○ 사업비 : 45,000천원(국비40%, 시비30%, 구비30%)</p> <p>○ 추진실적 : 13회 / 893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프로그램명 (장소)</th> <th style="width: 35%;">주요내용</th> <th style="width: 15%;">운영일자</th> <th style="width: 10%;">인원 (명)</th> <th style="width: 15%;">참여대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부평도호부는 왜 계양에 있을까? (부평도호부)</td> <td rowspan="4">- 부평도호부관아 견학 및 해설 - 내가 만드는 부평도호부 - 우리소리 배우기</td> <td>4. 10 (수)</td> <td>54</td> <td>효성초교 4학년</td> </tr> <tr> <td>4. 11 (목)</td> <td>61</td> <td>해서초교 3학년</td> </tr> <tr> <td>4. 12 (금)</td> <td>59</td> <td>해서초교 4학년</td> </tr> <tr> <td>4. 13 (토)</td> <td>48</td> <td>계양구민 (가족단위)</td> </tr> <tr> <td rowspan="4">꿈을 담은 계양산성 걷기 (계양산성)</td> <td rowspan="4">- 계양산성 문화해설 - 계양산성 보물찾기 - 내가 만드는 계양산성 - 전통 간식 만들기 체험</td> <td>5. 21 (화)</td> <td>44</td> <td>안산초교 3학년</td> </tr> <tr> <td>5. 22 (수)</td> <td>57</td> <td>해서초교 5학년</td> </tr> <tr> <td>5. 24 (금)</td> <td>42</td> <td>계산초교 4학년</td> </tr> <tr> <td>5. 25 (토)</td> <td>57</td> <td>계양구민 (가족단위)</td> </tr> <tr> <td rowspan="4">꼬마선비의 탐정도전기 (부평향교)</td> <td rowspan="4">- 부평향교 문화해설 - 선비에절체험 - 선비 탐정 도전하기 - 역사인물 마당극 (이찰, 이율형제)</td> <td>9. 4 (수)</td> <td>47</td> <td>효성동초 4학년</td> </tr> <tr> <td>9. 5 (목)</td> <td>25</td> <td>효성동초 5학년</td> </tr> <tr> <td>9. 6 (금)</td> <td>47</td> <td>효성동초 5학년</td> </tr> <tr> <td>9. 7 (토)</td> <td>52</td> <td>계양구민 (가족단위)</td> </tr> <tr> <td>달빛가득 부평향교 음악회 (부평향교)</td> <td>- 전통문화체험: 전통문양 스트링아트 전통조명등 만들기 - 달빛 음악회: 마술, 팡페라, 어쿠스틱, 퓨전 국악</td> <td>10. 11 (금) 18:00~21:00</td> <td>300</td> <td>계양구민</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명 (장소)	주요내용	운영일자	인원 (명)	참여대상	부평도호부는 왜 계양에 있을까? (부평도호부)	- 부평도호부관아 견학 및 해설 - 내가 만드는 부평도호부 - 우리소리 배우기	4. 10 (수)	54	효성초교 4학년	4. 11 (목)	61	해서초교 3학년	4. 12 (금)	59	해서초교 4학년	4. 13 (토)	48	계양구민 (가족단위)	꿈을 담은 계양산성 걷기 (계양산성)	- 계양산성 문화해설 - 계양산성 보물찾기 - 내가 만드는 계양산성 - 전통 간식 만들기 체험	5. 21 (화)	44	안산초교 3학년	5. 22 (수)	57	해서초교 5학년	5. 24 (금)	42	계산초교 4학년	5. 25 (토)	57	계양구민 (가족단위)	꼬마선비의 탐정도전기 (부평향교)	- 부평향교 문화해설 - 선비에절체험 - 선비 탐정 도전하기 - 역사인물 마당극 (이찰, 이율형제)	9. 4 (수)	47	효성동초 4학년	9. 5 (목)	25	효성동초 5학년	9. 6 (금)	47	효성동초 5학년	9. 7 (토)	52	계양구민 (가족단위)	달빛가득 부평향교 음악회 (부평향교)	- 전통문화체험: 전통문양 스트링아트 전통조명등 만들기 - 달빛 음악회: 마술, 팡페라, 어쿠스틱, 퓨전 국악	10. 11 (금) 18:00~21:00	300	계양구민
	프로그램명 (장소)	주요내용	운영일자	인원 (명)	참여대상																																																
	부평도호부는 왜 계양에 있을까? (부평도호부)	- 부평도호부관아 견학 및 해설 - 내가 만드는 부평도호부 - 우리소리 배우기	4. 10 (수)	54	효성초교 4학년																																																
			4. 11 (목)	61	해서초교 3학년																																																
4. 12 (금)			59	해서초교 4학년																																																	
4. 13 (토)			48	계양구민 (가족단위)																																																	
꿈을 담은 계양산성 걷기 (계양산성)	- 계양산성 문화해설 - 계양산성 보물찾기 - 내가 만드는 계양산성 - 전통 간식 만들기 체험	5. 21 (화)	44	안산초교 3학년																																																	
		5. 22 (수)	57	해서초교 5학년																																																	
		5. 24 (금)	42	계산초교 4학년																																																	
		5. 25 (토)	57	계양구민 (가족단위)																																																	
꼬마선비의 탐정도전기 (부평향교)	- 부평향교 문화해설 - 선비에절체험 - 선비 탐정 도전하기 - 역사인물 마당극 (이찰, 이율형제)	9. 4 (수)	47	효성동초 4학년																																																	
		9. 5 (목)	25	효성동초 5학년																																																	
		9. 6 (금)	47	효성동초 5학년																																																	
		9. 7 (토)	52	계양구민 (가족단위)																																																	
달빛가득 부평향교 음악회 (부평향교)	- 전통문화체험: 전통문양 스트링아트 전통조명등 만들기 - 달빛 음악회: 마술, 팡페라, 어쿠스틱, 퓨전 국악	10. 11 (금) 18:00~21:00	300	계양구민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p>○ 사업명 : 얼썩! 우리 춤, 생활의 활력</p> <p>○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p> <p>○ 주 관 : 계양문화원 (후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p> <p>○ 장 소 : 계양문화회관</p> <p>○ 참여인원 : 14명 (민들레문화봉사단)</p> <p>○ 사업비 : 5,200천원(국비)</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한국무용(살풀이, 입춤, 소고춤 등) 문화예술교육 - 총 20회 교육 (주 2회 / 3시간), 발표회 1회, 현장학습 1회 - 실버문화페스티벌 경기인천 예선 참가 (2019.7.19) 																																																				

○ 區 수탁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부평도호부 학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부평도호부 복원 학술대회 ○ 기간 : 2019. 3. ~ 10. ○ 일시 : 2019. 9. 27(금) 13:00~18:00 ○ 장소 : 계양구청 대회의실 ○ 주최/주관: 계양문화원/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 후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 참여인원 : 200명 ○ 사업비 : 15,000천원(시비60%, 구비40%)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평도호부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조사 및 발표 - ‘부평도호부 복원’에 대한 구민 공감대 형성 및 가치 공유 				
	구분	시간	내용	발표자	
	등록	13:10~13:30	'20		
	개회 및 축사	13:30~13:50	'20	개회사 : 계양문화원장 내빈 축사	
	학술발표	13:50~14:20	'30	조선 후기 부평도호부	강석화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14:20~14:50	'30	조선 후기 부평도호부 읍치의 풍수적 공간구성	권선정 교수 (동명대학교)
		14:50~15:20	'30	근대이행기 부평도호부 읍치의 토지이용변화	조정규 박사 (전남대학교)
	휴식	15:20~15:40	'20		
	학술발표	15:40~16:20	'30	근대이행기 부평도호부 읍치의 도로망 특성과 변천	최진성 박사 (전주고등학교)
		16:20~16:50	'30	조선후기 부평도호부 읍치경관의 복원	전종한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토론	16:50~17:40	'50	정치영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봉 박사 (국립중앙도서관) 손승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 : 강옥엽 박사 (인천개항장연구소)
폐회	17:40~17:50	'10			
황어장터만세운동 재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운동100주년기념 황어장터만세운동 재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9. 3. 2(토) 14:00 - 장소: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 광장 및 아라뱃길 일원 - 주최/주관: 계양문화원/계양구/인천보훈지청 - 참여인원: 1,000여명 - 사업비: 5,950천원(기부금) - 행사내용: 독립의 횃불 릴레이(만세운동 시가행진 재현) 환영행사(황어장터 광장) 횃불 주자봉송 및 퍼레이드(황어장터~ 굴현나루) 				

사업명	추진내용
<p>계양문화유산 해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9. 2. ~ 12월 ○ 장소 : 계양구 관내 문화유적지 (부평도호부, 부평향교, 계양산성, 영신군 묘, 황어장터 만세운동 기념관 등) ○ 대상 : 계양구민 및 인천시민 / 10인 이상 단체 ○ 사업비 : 5,060천원 ○ 참여인원 : 79회 / 1,59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생 86명, 초등학생 921명, 중고등학생 70명, 성인 522명 ○ 내용 : 문화유산 해설을 통한 계양의 문화유산가치 공유
<p>계양學 사색길 해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9. 2. ~ 12. ○ 교육시간 : 15시간 (6회) ※일반강의 10시간, 현장답사 5시간 ○ 장소 : 계양구 평생학습관 ○ 대상 : 사색길 해설가 7명 ○ 사업비 : 8,000천원 ○ 해설운영 : 40회 / 1,217명 참여 ○ 자율활동 : 코스구성 및 해설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활동 3회
<p>계양學 둘레길 해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9. 2. ~ 12. ○ 교육시간 : 15시간 (6회) ※일반강의 10시간, 현장답사 5시간 ○ 장소 : 계양구 평생학습관 ○ 대상 : 둘레길 해설가 7명 ○ 사업비 : 8,000천원 ○ 해설운영 : 43회 / 798명 참여 ○ 자체활동 : 코스구성 및 해설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활동 5회
<p>항토 제례문화 보존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9. 3. ~ 11. (매년 음력 2.1 / 7.1 / 10.1) ○ 장소 : 계산동, 효성동 도당 ○ 주최/주관: 계양문화원/ 계산리중계, 효성동우회 ○ 참여인원 : 300여명 ○ 사업비 : 4,000천원 ○ 내용 : 지역의 민속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풍요와 구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문화보존

○ 區 施設수탁 운영

사업명	주요내용				
구립도서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도서관 4개 도서관 수탁운영 ○ 근무인원 : 32명 				
	구분	연간 이용인원	프로그램운영		보유장서
			개수	참여인원	
	계	559,759 (100%)	246	61,280	168,716
	작전도서관 (IT 포함)	244,550 (43.6%)	63	17,082	40,967
	효성도서관	116,181 (20.8%)	78	9,457	45,049
	서운도서관	81,491 (14.6%)	53	20,419	38,682
동양도서관	117,537 (21.0%)	52	14,322	44,018	
계양여성회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구 여성대상 문화강좌 및 문화센터운영 ○ 근무인원 : 8명 ○ 프로그램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강좌 운영 : 318개 운영 / 6,447명 - 단기강좌 운영 : 8개 운영 / 197명 ○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포서 : 29회 / 110명 - 노력봉사(반찬나눔) : 17가정 / 50회 				
계양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여성 단절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취업알선 ○ 근무인원 : 9명 ○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 77명 수료 - 집단상담훈련 : 206명 수료 - 취업연계 : 2,042명 - 새일인턴연계 : 59명 (인턴 54명, 결혼이민자 5명) - 구인·구직등록 : (구인 : 4,690명 / 2,472건, 구직 : 5,259명 / 5,829건) - 여성친화기업 협약 : 37건 - 찾아가는 이동상담 : 18건 				

2.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가. 2019년도 세입예산

○ 세입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세입액	증감	비고
계	1,394,087,000	1,381,304,255	△12,782,745	
보조금	999,112,000	980,938,800	△18,173,200	집행잔액 반납
문화원사업 (자체)	394,975,000	400,365,455	5,390,455	

○ 보조금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세입액	증감	비고
계	999,112,000	980,938,800	△18,173,200	
인건비	112,042,000	106,147,530	△5,894,470	집행잔액 반납
운영비	20,800,000	18,540,000	△2,260,000	집행잔액 반납
문화사업비	36,656,000	36,656,000	0	
시설수탁운영	739,354,000	739,354,000	0	
수탁사업	40,060,000	30,553,000	△9,507,000	집행잔액 반납
공모사업	50,200,000	49,688,270	△511,730	집행잔액 반납

○ 문화원 사업(자체)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세입액	증감(증액)	비고
계		394,975,000	400,365,455	5,390,455	
경상운영비	연회비	19,000,000	21,640,000	2,640,000	임원26명/15,500,000 회원195명/6,140,000
	이월액	22,775,000	22,775,751	751	
	찬조금	1,000,000	0	△1,000,000	
	기타수입	1,000,000	80,078	△919,922	
사업비	기금	336,200,000	340,869,626	4,669,626	
	기부금	15,000,000	15,000,000	0	전년도 이월액

나. 2019년도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액①	세입액②	집행액③	잔액②-③	비고
계	1,394,087,000	1,381,304,255	997,043,660	384,260,595	
보조금	999,112,000	980,938,800	980,938,800	0	
문화원사업 (자체)	394,975,000	400,365,455	16,104,860	384,260,595	

○ 보조금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①	세입액②	집행액③	잔액②-③	비고
계		999,112,000	980,938,800	980,938,800	0	
인 건 비	급 여	72,500,000	72,500,000	72,500,000	0	
	명절휴가비	7,252,000	7,252,000	7,252,000	0	
	시간외수당	9,089,000	6,679,580	6,679,580	0	
	급 식 비	4,680,000	4,680,000	4,680,000	0	
	연가보상비	1,346,000	933,120	933,120	0	
	보험부담금	9,269,000	6,196,830	6,196,830	0	
	퇴직적립금	7,906,000	7,906,000	7,906,000	0	
사무국 운영비		20,800,000	18,540,000	18,540,000	0	
문화사업	36,656,000	36,656,000	36,656,000	0		
수 탁 사 업	여성회관 운영	703,725,000	703,725,000	703,725,000	0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35,629,000	35,629,000	35,629,000	0	
	문화해설사 운영	5,060,000	2,753,000	2,753,000	0	
	계양학학습길 운영	16,000,000	8,800,000	8,800,000	0	
	도 당 제	4,000,000	4,000,000	4,000,000	0	
	부평도호부학술대회	15,000,000	15,000,000	15,000,000	0	
공 모 사 업	생생문화재	45,000,000	44,488,270	44,488,270	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5,200,000	5,200,000	5,200,000	0	

○ 문화원사업(자체)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①	세입액②	집행액③	잔액②-③ (이월액)	비고	
계	394,975,000	400,365,455	16,104,860	384,260,595		
경 상 운 영 비	소 계	43,775,000	44,495,829	16,104,860	28,390,969	
	일반운영비	13,900,000	13,900,000	1,925,280	11,974,720	
	자산취득비	3,000,000	3,000,000	0	3,000,000	
	업무추진비	4,800,000	4,800,000	3,796,180	1,003,820	
	직급보조비	6,000,000	6,000,000	6,000,000	0	
	시간외근무수당	1,800,000	1,800,000	0	1,800,000	
	여 비	1,600,000	1,600,000	733,400	866,600	
	임원역량강화	3,000,000	3,000,000	0	3,000,000	
	동아리활동사업	4,000,000	4,000,000	0	4,000,000	
	실비보상금	1,000,000	1,000,000	650,000	350,000	
	장학기탁금	3,000,000	3,000,000	3,000,000	0	
	예비비	1,675,000	2,395,829	0	2,395,829	
사 업 비	소 계	351,200,000	355,869,626	0	355,869,626	
	기 금	336,200,000	340,869,626	0	340,869,626	
	기부금	15,000,000	15,000,000	0	15,000,000	

의안 번호	제 2 호
----------	-------

2020년도 사업 및 예산(안)

1. 제안자: 계양문화원장

2. 제안일자: 2020. 2. 26

3. 제안사유

- 문화원 정관 제24조(총회의 기능)
 - 제4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제5호 사업계획의 승인

4. 의결주문

- 2020년도 사업 및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5. 내용: 별첨

I . 2020년도 사업계획

【자체사업】

1.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 기간 : 2020. 4 ~ 11월
- 목적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 참여기회 제공
- 대상 : 계양구민, 문화원 동아리
- 내용 : 분재 작품전시회, 한국무용공연, 사진전시회, 합창단 공연, 시화전 향토문화연구 활동 등 회원동아리를 중심으로 문화사업 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사업비 : 6,000천원
- 추진일정
 - 분재작품전시회 : 4. 23~ 4. 29
 - 민들레 봉사단 공연 : 10월
 - 시민합창단 공연 : 11월
 - 문학회 시화전시회 : 11월
 - 역사연구회 향토문화발굴 : 10월~ 11월
 - 사진동아리 작품사진전: 10월

2. 문화활동가 양성

□ 문화강좌(사진교실) 운영

- 기간 : 2020. 4 ~ 10월(총 40시간, 20회 / 주 1회, 1회 2시간)
- 목적 :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전문가 육성
- 대상 : 계양구민 40명
- 내용 : 사진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사진전문가를 양성하여 사진동아리 활동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계양의 역사를 기록하는 활동가를 육성
- 추진일정
 - 2월 : 교육과정 구성, 강사 섭외
 - 3월 : 수강생 모집 및 홍보
 - 4월~ 9월 : 교육진행

- 10월 : 작품 제출 및 전시회 준비
- 교육구성
 - 이론강의 30시간 (카메라 이론)
 - 현장강의 10시간 (촬영기법, 현장실사 등)
- 사업비 : 3,400천원
 - 강사료 2,400천원, 홍보비900천원, 운영비 100천원

□ 인문학 강좌(문예창작) 운영

- 기간 : 2020. 4 ~ 10월(총 36시간, 18회/주1회, 2시간)
- 목적 : 교양 인문학과 기초 문예창작 과정 교육을 통한 인문학 관심 증대
- 대상 : 계양구민 20명
- 내용 : 문학에 소양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계양의 문화를 기록하는 문예창작 활동가를 육성하여 문학동아리 기반조성
- 추진일정
 - 2월 : 교육과정 구성, 강사 섭외
 - 3월 : 수강생 모집 및 홍보
 - 4월~ 9월 : 교육진행
 - 10월 : 작품 제출 및 작품집 발간
- 사업비 : 3,600천원(강사료)

□ 2020년도 계양큐레이터 보수교육

- 기 간 : 2020. 4. ~ 5월 (7회/주 1회 2시간)
- 목 적 : 계양의 문화유산 및 지역문화 해설역량강화
- 장 소 : 계양구 관내
- 교육인원 : 30명
- 교육내용 : 계양의 문화유산 및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
- 추진일정
 - 2월 : 교육과정 구성 및 강사섭외
 - 3월~ 5월 : 교육진행
- 사업비 : 1,600천원
 - 강사료 1,400천원, 교재제작비 200천원

□ 계양큐레이터 워크숍

- 기 간 : 2020. 5. ~ 6월 / 1회
- 대 상 : 계양큐레이터 위촉자(25명)
- 장 소 : 추후선정
- 내 용 : 문화유산해설사 상호간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해설 역량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사업비: 5,000천원
 - 버스임차료, 식비 및 숙박료, 강사료, 강의실 임차비 등

3. 문화유산 교육

□ 계양역사 교육

- 기 간 : 2020. 2. ~ 12월
- 목 적 : 지역의 문화재를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학습을 통해 계양의 향토유산 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함
- 장 소 : 관내 초·중학교, 도서관 및 문화유적지
- 대 상 : 500여명
- 내 용 : 문화유산해설사 강의와 지도로 청소년들이 계양의 문화재 모형을 만들어보며 체험하는 문화유산교육
- 추진일정
 - 2월 : 사업 홍보
 - 3월~12월 : 교육 진행
- 사업비 : 1,200천원
 - 강사료 1,200천원 (2명/ 20회)

□ 문화유적 탐방

- 기간 : 2020. 4. ~ 10월
- 목적 : 국내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답사를 통해 우리역사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천의 역사중심지인 계양구민으로의 자긍심을 제고하며 문화원 회원간에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
- 대상 : 계양구민 200명
- 장소 : 전북 고창, 경기도 여주, 전북 정읍 등
- 시기 : 4월~ 5월(2회), 9월~10월(2회) ※장소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 4,246천원
 - 버스임차료 1,800천원, 식비 1,560천원, 체험비600천원,운영비 286천원

4. 부평향교 달빛음악회

- 기간 : 2020. 9. ~ 10월
- 목적 : 문화재를 보존의 대상만이 아닌 참여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
- 장소 : 부평향교
- 내용 : 전통문화 체험 및 야간음악회
- 추진일정
 - 6월~7월 : 행사계획 수립 및 출연팀 섭외
 - 8월~9월 : 프로그램 홍보
 - 10월 : 음악회 개최
- 사업비 : 5,000천원
 - 공연비 2,400천원, 장비임차비 1,600천원, 체험운영비 1,000천원

5. 계양향토사료 찾기사업

- 기간 : 2020. 2. ~ 12월
- 목적 : 계양의 과거 모습과 생활사의 변화를 기록 및 보존
- 대상 : 계양구 지역
- 내용 : 옛 모습, 생활사, 민속자료, 이야기 구술, 설화 등 가정에 보관 중인 역사적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할 자료를 기록정리하고, 계양을 소재로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수집하여 전시
- 추진일정
 - 2월~4월 : 기초 자료조사 및 구술 대상자 선정
 - 5월~6월 : 사진공모 및 자료수집
 - 7월~9월 : 구술채록 및 사진정리 기록
 - 10월 : 구술원고 취합 및 전시준비
 - 11월 : 계양을 주제로 사진 및 사료전시회
- 사업비 : 13,610천원
 - 구술채록(계양동)7,500천원, 사진촬영 700천원, 홍보물 제작1,410천원
사료 및 사진전시 4,000천원

【공모사업】

1.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재청)

- 사업명 : 생생 계양여행 <3色매력 우리고을>
- 사업기간 : 2020. 3월 ~ 11월 / 총 13회
- 사업목적 : 문화재가 우리 동네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체험하여 지역에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함
- 사업장소 : 부평도호부, 부평향교, 계양산성
- 참여인원 : 총 800여명 (관내 청소년 및 가족)
- 사업비 : 42,500천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
- 사업내용 : 관내유적지에서 역사교육, 전통문화, 공연관람, 놀이 등을 체험하며 향토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일시	장소	참가대상 및 인원
① 꼬마 선비의 탐정 도전기	향교의 가치를 살려 현대적 교육시설로서 전통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향교에 대해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보기	4월 중 09:00~12:00 (총 4회)	부평향교	초등학생, 가족 회당 40명내외
② 달빛 가득 계양산성	계양산성에서 전통공연과 함께 체험마당을 진행하여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향유	5월 중 19:00~20:30	계양산성	초등학생,가족 및 구민 300명 내외
③ 꿈을 담은 계양산성 걷기	계양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도의 군사적 요충지로 산성에서 발굴된 중요 유물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보며 계양산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6월 중 09:00~12:00 (총 4회)	계양산성	초등학생, 가족 회당 40명내외
④ 부평도호부 역사 탐험대	과거 부평도호부가 어떤 기능을 하던 곳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도호부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이해	9월 중 09:00~12:00 (총 4회)	부평도호부	초등학생, 가족 회당 40명내외

【區 수탁사업】

1. 『부평도호부 학술대회』 개최

- 기간 : 2020. 3. ~ 10.
- 목적 : 조선시대 부평도호부를 중심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사직단 등 학술연구를 통해 1차년도 학술대회에 부족한 연구를 보완하고 부평도호부복원을 위한 학술적 가치제고와 구민공감대 형성
- 내용 :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 사업비 : 20,000천원

- 추진일정
 - 3월 : 학술대회 방침 및 계획수립
 - 4월 : 과업수행 연구용역단체 선정
 - 4월 ~ 9월 : 학술연구 및 조사
 - 10월 : 학술대회 개최

2. 향토제례문화 보존사업

- 기 간 : 2020. 2. ~ 11. (매년 음력 2.1, 7. 1, 10. 1)
- 장 소 : 계산동 산천제 (계양문화회관 옆 제당)
 효성동 도당제 (효성약수터 위 도당)
- 내 용 : 구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우리고장의 민속적
 전통제례를 보존하고 전승함
- 사업비 : 14,000천원 (계양구 수탁사업)

3. 「계양 큐레이터」 문화유산 해설운영

- 기 간 : 2020. 3. ~ 12.
- 인 원 : 계양 문화유산 해설사 (계양 큐레이터) 위촉자 25명
- 장 소 : 부평도호부, 부평향교, 계양산성,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영신군묘역, 이선봉 묘역, 이찰·이율형제정려 등 관내유적지
- 해설사활동 : 학교, 기관, 단체 문화해설 수시접수 해설운영
- 사 업 비 : 5,060천원
- 흥 보 : 관내 학교, 도서관, 유치원 안내문 발송
- 운 영 : 해설사별 순차별 운영 및 지정 근무

4. 「계양學 학습길 해설」 운영

- 목 적 : 계양의 마을들을 학습자원화하여 계양학 학습길로 정립하고
 지역역사인문 해설활동 지원
- 기 간 : 2020. 3. ~ 12.
- 장 소 : 계양구 평생학습관 및 학습길 현장
- 대 상 : 계양구민,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기관 등

○ 추진일정

- 2월 : 교육계획수립 및 강사섭외
- 3월 : 수강생모집 홍보
- 4월~6월 : 교육진행
- 7월~12월 : 학습길 확대 운영

○ 사 업 비 : 16,000천원

- 강사료 , 운영비, 현장답사비, 활동보상비

○ 내 용 : 지역별 8개 학습길 해설활동

연번	학습길	코 스
1	장미원길	주차장-정자-장미원-무궁화동산-이규보시비-느티나무길
2	황어장길	만세운동기념관-옛 계양면사무소 자리-이은선순국지-황어조각상-굴현나무-수향루
3	계양산성길	계양산성박물관-육각정-집수정-북문지-팔각정-하느재-계양공원
4	향교·자오당길	부평향교-초정터 추정지-고양골어린이공원-연무정-자오당터
5	반딧불이길	목상동 솔숲-반딧불이, 도롱뇽 서식지-솔숲-산딸나무-뚝방-아까시숲-계수나무숲-솔밭쉼터
6	마실길	계양역-메타세콰이어-금륜역 터-목공예전시관-소촌마을
7	당산길	동양도서관-동구제산-이선봉묘역-굴포천-농로
8	두리생태공원길	계양역-두리생태공원-메타세콰이어-그늘쉼터-왕버들-포플러-정자

※ 향후 2개 학습길 추가 예정 (효성동, 서운동 지역)

5. 區 수탁시설 운영

□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 사 업 비 : 2,747,589천원
- 대상시설 : 구립도서관 4개소, 계양여성회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근무인원 : 50명(구립도서관 33명, 여성회관8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명)

시 설 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수탁기간
구립도서관 (작전, 효성, 서운, 동양)	1,969,544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관 운영	2016.3.1~ 2020.2.28
계양여성회관	738,955	여성의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문화교육, 여성복지증진 사업 추진	2018.1.1~ 2020.12.31
계양여성새로 일하기센터	39,090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2018.1.1~ 2020.12.31

□ 20년도 중점추진사업

【구립도서관】

-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확대: 연3회→ 5회(도서관별 순회개최)
- 구립도서관 소식지발간: 도서관 행사, 프로그램, 도서추천, 이용안내
- 작전도서관 특성화코너 운영 및 북큐레이션 전시
 - 자료실별 토론·작문 코너운영, 장서활용한 도서정보 제공
- 효성도서관 청소년프로그램 : 영어뮤지컬 운영/뮤지컬 강사지도
 - 매주토 16:00/ 3월~ 6월, 9월~ 12월
- 서운도서관 자료실 특성화 코너운영
- 동양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야간독서문화프로그램 추가운영

【계양여성회관】

- 문화강좌운영(분기): 정기/80강좌, 단기/2강좌
- 체력단련실운영 : 상시모집
- 무지개예술단운영: 연1회 정기공연/월2회 시설방문 공연/
매주 수요일 독거노인 17가정 반찬나눔,
- 개관기념식 및 예술제 개최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직업상담 및 교육훈련 사업: 연20회 상담/4개교육과정
-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 월2회, 주민센터, 도서관등
- 새일 인턴연계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47개기업/47명 발굴
- 사후관리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
- 취업연계사업: 기업협약 47개소/구인2,790건, 구직4,675건 발굴

II.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제1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천원

세입		세출	
항목	예산액	항목	예산액
총계	1,469,837	총계	1,469,837
문화원운영(자체)	411,759	문화원운영(자체)	411,759
보조금	1,058,078	보조금	1,058,078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예산의 집행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2020년도 정기총회 이후 국고보조금 또는 공모사업 등 목적사업 지원금이 있을 경우의 추가예산은 문화원장이 집행하고 그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 2020년도 최종 개최되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결산을 대비하여 정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결한다.

1. 2020년도 세입예산

가. 세입 총괄

[단위: 천원]

관 · 항	예산액	내역
총 계	1,469,837	
문화원운영(자체)	411,759	
경상수입	55,8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비 ○ 이월금 ○ 찬조금 ○ 기타수입
특별수입	355,8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적립 예치금 ○ 기금적립금 이자 ○ 기부금
보조금	1,058,078	
운영비보조	182,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사업 활동비 ○ 사무국 직원 인건비 ○ 경상사업비 지원
수탁사업	875,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해설사 운영 ○ 생생문화재 사업 ○ 부평도호부 학술대회 ○ 도당제 ○ 계양학 학습길 운영 ○ 계양여성회관 수탁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탁운영

나.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관 · 항 · 목	예산액	산출내역
총 계	1,469,837	
문화원운영(자체)	411,759	
경상수입	55,890	
연회비	2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장 2,000,000원 × 1명 = 2,000,000원 ○ 부원장 1,000,000원 × 2명 = 2,000,000원 ○ 임 원 500,000원 × 25명 = 12,500,000원 ○ 일반회원 30,000원 × 200명 = 6,000,000원

	이월금	28,390	○ 전년도 이월금	28,390,969원
	찬조금	2,000	○ 1,000,000원 × 2명	2,000,000원
	기타수입	3,000	○ 이자 및 잡수입	3,000,000원
	특별수입	355,869		
	적립금	340,869	○ 기 금 ○ 기금이자	320,000,000원 20,869,626원
	기부금	15,000	○ 전년도 이월금	15,000,000원
	보조금	1,058,078		
	운영비보조	182,473		
	경상사업보조	38,656	○ 문화원 사업활동비	38,656,000원
	단체운영비보조	143,817	○ 인건비(사무국장, 직원2명) ○ 보험, 적립금 ○ 사무국운영비 ○ 업무추진비 ○ 면접시험위원 수당	103,143,000원 18,674,000원 7,200,000원 12,000,000원 2,800,000원
	수탁사업	875,605		
	문화해설사운영	5,060	○ 문화재 해설사 수당	5,060,000원
	생생문화재 사업	42,500	○ 생생문화재 사업(국,시,구비)	42,500,000원
	부평도호부 학술대회	20,000	○ 부평도호부학술대회	20,000,000원
	도당제 운영	14,000	○ 도당제(효성동,계산동)	14,000,000원
	계양학 학습길	16,000	○ 계양학 학습길 운영	16,000,000원
	여성회관 운영	738,955	○ 계양여성회관 수탁운영사업	738,955,000원
	여성새일센터 운영	39,090	○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탁운영사업	39,090,000원

2. 2020년도 세출예산

가.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관.항	예산액	내역
총 계	1,469,837	
문화원운영(자체)	411,759	
사무관리비	55,890	○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큐레이터워크숍),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자산취득비, 시간외수당, 임원역량강화, 문화동아리활동, 예비비
사업비	15,000	○ 향토사료발굴
기금	340,869	○ 기금적립금 ○ 기금이자
보조금	1,058,078	
사업활동보조	38,656	○ 문화원 경상보조사업
운영비보조	143,817	○ 사무국 직원인건비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직원 퇴직적립금 ○ 사무국운영비(일반운영비, 여비) ○ 업무추진비, 심사위원수당
수탁사업	875,605	○ 문화해설사 운영 ○ 생생문화재 사업 ○ 부평도호부 학술대회 ○ 도당제 ○ 계양학 학습길 운영 ○ 계양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탁운영

나.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관.항.목	예산액	산출내역
총 계	1,469,837	
문화원사업(자체)	411,759	
사무관리비	55,890	
일반운영비	17,800	○ 일반수용비 3,600,000원 · 300,000*12월 ○ 행사운영비 8,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레이터워크숍 5,000,000원*1식 · 일반행사운영비 3,000,000원*1식 ○ 직원교육비 1,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0*3회 ○ 특근급식비 1,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0원*6월 ○ 회의비 3,8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회 1,000,000원*2회 · 이사회 300,000원*6회
여비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6,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20,000원*4회*2명*10월 · 관외 200,000원*3명*4회 · 국외1,000,000원*2회
업무추진비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6,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0원*12월
자산취득비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1,200,000원*2대 · 녹음기 600,000원*1대 · 문서파쇄기, 비품구입비 1,000,000원*1식
직급보조비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보조비 6,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주임, 사원 500,000원*12월
시간외근무수당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1,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원*2명*5월
임원역량강화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역량강화행사 행사비 3,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00원*1식
문화동아리활동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문화사업 및 행사비 5,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음악회, 전시회, 학습활동, 행사 등
예비비	7,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7,090,000원
사업비	15,000	
향토사료발굴	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향토사료발굴 15,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사료 조사비 15,000,000원*1식
기금	340,869	
기금	340,8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320,000,000원 ○ 기금이자 20,869,626원

보조금		1,058,078	
사업활동보조		38,656	
	문화사업	38,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 달빛음악회 5,000,000원 ○ 문화활동가 양성 8,6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창작반 3,600,000원, 사진반 3,400,000원, 큐레이터 교육 1,600,000원 ○ 문화유산 교육 1,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역사교육 30,000원*2인*20회 ○ 문화유적탐방 4,246,000원 ○ 계양향토사료조사 13,610,000원 ○ 생활문화동아리육성 6,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동아리사업 1,000,000원*6개단체
운영비보조		143,817	
	사무국운영	143,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 여 8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주임, 사원 6,666,530원*12월 ○ 명절휴가비 8,00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주임, 사원 6,666,530원*120% ○ 시간외근무수당 9,11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주임, 사원 50,610원*1명*15시간*12월 ○ 급식비 4,68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주임, 사원 130,000원*3명*12월 ○ 연가보상비 1,34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주임, 사원 33,750원*8시간*5일 ○ 보험부담금 10,078,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 부담금 103,143,000원*9.77% ○ 퇴직적립금 8,59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143,000원*1/12월 ○ 사무국운영비 7,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운영비 5,200,000원, 출장여비2,000,000원 ○ 업무추진비 12,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0원*12월 ○ 채용심사 및 위원회운영수당 2,8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및 운영위원수당 100,000원*7명*4회

수탁사업	875,605		
문화해설사운영	5,060	○ 문화해설사 운영수당	5,060,000원
생생문화재	42,500	○ 생생문화재 공모사업비	42,500,000원
부평도호부 학술대회	20,000	○ 부평도호부 학술대회 사업비	20,000,000원
도당제	14,000	○ 도당제운영 지원사업비 · 효성동 도당제 3,000,000원*2회 · 계산동 도당제 4,000,000원*2회	14,000,000원
계양학 학습길 운영	16,000	○ 계양학 학습길 운영	16,000,000원
여성회관 운영	738,955	○ 계양여성회관 수탁운영	738,955,000원
여성새일센터 운영	39,090	○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탁운영	39,090,000원

임원(이사) 선임의 건

1. 제안자: 계양문화원장

2. 제안일자: 2020. 2. 26

3. 제안사유

- 문화원정관 제13조(임원의 선임)
- 문화원정관 제14조(임기)

4. 의결주문

- 임원(이사) 선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5. 내용(별첨): 문화원임원(이사)선임 안

문화원 임원(이사)선임 안

1. 근거

○ 계양문화원 정관

- 제13조(임원의 선임)①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중략) 임원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임원의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4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17조(임원의 사퇴)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2. 사퇴임원

- 사퇴이사(2020.1.14) : 서동섭 · 정연국 · 홍군선 이사

3. 임원(이사)선임 후보자

○ 이사 후보자(3명)

- 임기 : 2020. 2. 26 ~ 2021. 4. 14 ※전임이사 잔여임기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요약력
이사	안용완 (安容完)	1968.4.7	계양구 효서로17 효성빌딩 5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향대학교 경영학 박사수료 • 주식회사 바이패스대표이사 • 효성산업 대표
"	윤철상 (尹哲相)	1964.7.7	계양구 문화로 142 쌍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 장상농원 대표
"	박상인 (朴商仁)	1958.6.13	계양구 장제로 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계양1동 주민자치위원장 • 박촌주유소 대표

IV. 참고자료

- 문화원현황(일반현황, 임원현황, 동아리현황)
- 지방문화원진흥법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문화원육성 및 지원에관한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운영및 지원에관한조례
- 계양문화원 정관
- 계양문화원 회원관리규정

문화원 일반현황

1. 설립년월일: 2005. 6. 10

2. 소재지 및 사무실

- 문화원주소: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6층 609호
- 전 화: 032-450-5753 (FAX 032-541-8684)
- 홈페이지: <http://igycc.or.kr> (이메일 gycc5753@daum.net)

3. 연 혁

- 2005. 4. 15 창립총회
- 2005. 6. 10 설립인가(인천광역시)
- 2005. 9. 27 개원식

4. 역대원장

- 초대: 홍창의(2005.4.15 ~ 2007.3.22)
- 2 대: 이창규(2007.3.23 ~ 2009.4.14)
- 3 대: 이건용(2009.4.15 ~ 2013.4.14)
- 4 대: 이건용(2013.4.15 ~ 2017.4.14)
- 5 대: 이찬용(2017.4.15 ~ 현재)

5. 조 직

○ 인 원

단위: 명

임 원				일반 회원	사무국	문 화 사업단	수탁시설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계	여성 회관	새일 센터	구립도서관
1	2	20	2	195	3	1	50	8	9	33

○ 區 수탁시설

단위: 명

계	계양여성회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립도서관(4개소)						
	소 계	관 장	행 정	시 설	환 경	소 계	직 업 상 담	취 업 설 계	행 정	소 계	관 장	분 관 장	행 정	사 서	관 리	환 경
50	8	1	5	1	1	9	2	6	1	33	1	3	2	14	8	5

6. 2019년도 주요추진사업

- 생생문화재 사업(부평도호부, 부평향교, 계양산성 체험학습)
- 부평도호부 학술대회 개최
- 어르신문화프로그램(공모)/ 한국무용 강좌
- 문화해설운영 및 2차 계양큐레이터 양성교육
- 계양학 학습길 해설 운영
- 문화강좌(사진교실)
- 계양향토사료찾기사업
- 향토지 계양마을이야기 1 「옛 부평읍내, 계산동」 발간
- 역사문화탐방(유네스코 문화유산 답사)
- 3·1운동100주년기념 황어장터만세운동 재현행사 및 청소년역사교육(항거: 유관순이야기 영화관람, 감상문쓰기)
- 구립도서관 수탁운영(작전·동양·서운·효성도서관 16. 8월~ 통합운영)
- 계양여성회관 수탁운영(2011. 12. 1~ 현재)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탁운영(2014.1.15개관): 2013.10.23 ~현재

7. 연도별추진사업(2005년~ 2018년)

2005년도

- 2005. 4. 15 문화원창립총회
- " 5. 16 제1회 전통성년식
- " 9. 27 문화원개원 기념식
- " 8.20~12월 역사문화유적 탐방

2006년도

- 2006. 3. 15 정기총회
- " 3. 22 제1회계양구 풍물경연대회
- " 5. 16 제2회 전통성년식 개최
- " 6. 16~11월 금요한마당(월2회)

- 2006. 7. 5 임시총회
- " 9.2~12.23 한자지도사 자격증반
- " 12. 28 임시총회

□ 2007년도

- 2007. 3. 23 정기총회(제2대문화원장 보선:이창규)
- " 5. 18~11월 금요한마당(월2회)
- " 5. 31 제1·2대 문화원장 이·취임식
- " 8월~ 12월 제8회 이규보서화전
- " 8. 20 임시총회
- " 9. 28~10.6 제13회 구민의날 경축행사
- " 10. 26 명사초청 강연회
- " 12. 12 예술인단체 합동공연
- " 12.26~12.28 전통문화예절학교

□ 2008년도

- 2008. 2. 28 정기총회
- " 2. 21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 " 4. 13 전통문화체험 편사놀이
- " 5월~11월 금요한마당(월2회)
- " 5. 17 전통혼례식 및 성인식
- " 8월~10월 제9회 이규보서화대전개최
- " 10. 28 계양산 도당제
- " 12. 16 송년콘서트

□ 2009년도

- 2009. 2. 26 정기총회(제3대 문화원장선임:이건용)
- " 2. 9 정월대보름 전통민속 한마당축제
- " 4.20~4.22 분재작품전시회
- " 5. 9 전통혼례식 및 성인식
- " 6월~7월 계양산 숲속음악회(10회)
- " 7.1~8.31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절학교 운영
- " 8월~10월 제10회 이규보서화대전 개최
- " 10.17~10.20 한빛사진전시회
- " 11. 11 계양산 산신제
- " 12. 18 송년문화콘서트

□ 2010년도

- 2010. 2. 25 정기총회
- " 2. 26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축제
- " 4.1~11.30 문화유적 탐방(5회)
- " 5. 15 전통성인식
- " 5.26~5.28 분재작품전시회
- " 6. 15 명사초청 강연회
- " 7.1~8.31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절학교
- " 7월~12월 제11회 이규보서화대전
- " 9월~10월 미래광장거리 작은음악회
- " 12. 17 남사당놀이 특별공연

□ 2011년도

- 2011. 2. 21 정기총회
- " 3월~11월 제12회 계양서화미술대전
- " 3월~12월 전통문화예술교육(2개초등학교)
- " 4.25~4.28 분재작품전시회
- " 5월~11월 금요한마당(월2회)
- " 6.11~10.29 미래광장거리 상설문화마당
- " 7. 22 작전도서관 위탁운영(2011.5.18 개관)
- " 10. 5 제17회 구민의날 기념공연
- " 10. 18 계양산 효성동 도당제
- " 10.24~10.27 제9회 한빛 사진전시회

□ 2012년도

- 2012. 2. 28 제7차 정기총회
- " 1. 1~ 여성복지회관 위탁협약(3년)
- " 3월~8월 제13회 계양서화미술대전
- " 3월~12월 초등학교 전통문화예술교육(2개교)
- " 4.23~4.27 분재작품전시회
- " 4월~11월 문화유적탐방(2회)
- " 5.1~10.31 어르신문화학교
- " 5월~10월 미래광장거리 프리마켓
- " 10. 3 남사당놀이 특별공연
- " 10. 18 도당제 (계산동,효성동)/4회

□ 2013년도

- 2013. 2. 26 제8차 정기총회(제4대문화원장 선임:이건용)
- " 3월~8월 제14회 계양서화미술대전
- " 4. 20 작전도서관 수탁운영(2년)
- " 4.23~4.27 분재작품전시회
- " 5월~10월 프리마켓 체험마당(계양산입구 야외공연장)
- " 5월~10월 금요한마당 운영(월2회/4개소)
- " 10. 3 제7회 계양풍물경연대회
- " 10. 18 도당제(계산동, 효성동)
- " 10. 2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2014.1.15개관)

□ 2014년도

- 2014. 2. 26 제9차 정기총회
- " 1월~12월 계양아트갤러리 운영
- " 3월~8월 제15회 계양서화미술대전
- " 4.21~4.25 분재작품전시회
- " 4월~12월 문화유적탐방(4회)
- " 5월~10월 프리마켓 체험한마당(2개소)
- " 10. 11 제8회 계양풍물경연대회

□ 2015년도

- 2015. 2. 24 제10차 정기총회
- " 1. 1 계양여성회관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수탁(3년)
- " 3월~8월 제16회 계양서화미술대전

- 2015. 4. 26 계양산국악제
- " 5.20~11.14 어르신문화학교
- " 7월~10월 전국한시백일장
- " 8.17~10.2 계양역사 사진공모전
- " 9. 12 계양정명 800년 기념공연
- " 10. 2 계양역사 퀴즈대회
- " 10. 17 제9회 계양풍물경연대회

□ 2016년도

- 2016. 2. 18 제11차 정기총회
- " 3. 1~ 계양구립도서관(작전·효상·서운·동양도서관)운영수탁(2년)
- " 3월~8월 제17회 계양서화미술대전
- " 4.18~6.30 청소년 예절학교운영(4개초등학교)
- " 9.6~12.6 계양큐레이터 양성교육
- " 9.9~9.30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5회)
- " 9월~12월 문화유적 탐방(4회)
- " 10. 9 제10회 계양풍물경연대회

□ 2017년도

- 2017. 2. 14 제12차 정기총회(제5대문화원장 선임: 이찬용)
- " 3월~11월 생생문화재 사업(문화재청 공모사업)/1년차
- " 3월~10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우쿨렐라)
- " 3월~8월 제18회 계양서화미술대전
- " 4. 14 제4·5대문화원장 이·취임식
- " 4월~12월 문화유적탐방(4회)
- " 7.3~10.18 문화강좌(한국사)

- 2017. 9.1~12.8 청소년지역문화창조사업(미디어교육)
- " 10. 14 계양예능동호회 경연대회

□ 2018년도

- 2018. 2. 21 제13차 정기총회
- " 1. 1~ 계양여성회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수탁(3년)
- " 2월 「계양의전통의례」 발간, 계양문화원/인천문화원연합회
- " 3. 1~ 계양구립도서관(작전·효성·서운·동양도서관)수탁(2년)
- " 3월~12월 생생문화재 사업(문화재청공모 2년차 사업)
- " 3월~8월 제19회 계양미술대전
- " 3.5~4.19 사색길 심화교육
- " 3월~12월 「계양산이야기」 발간(인문연특성화사업)
- " 4월~11월 문화유적 탐방(4회)
- " 5.3~8.30 계양큐레이터교육(문화유산해설사14명 위촉)
- " 8.10~12.7 문화강좌(사진교육)
- " 10. 13 계양예능동호회 경연대회
- " 10.27~11.3 문화유산체험교육

문화원 임원현황

(직위, 취임, 연령순)

2020. 1. 21. 기준

연번	직위	성명	임원선임일	주요약력	비고
1	원장	이찬용	2012.2.28	· 제5대문화원장취임(17.4.15) · 효성농원 대표	
2	부원장	신선호	2016.5.24	· 계산신협 이사장	
3	"	이문선	2005.6.10	· 성원환경(주)대표이사	
4	이사	장재덕	2005.6.10	· 인천장례식장 대표이사	
5	"	이노경	2007.10.22	· 계양새마을금고 이사장	
6	"	박혜숙	2007.10.22	· 계양노인전문요양원장	
7	"	이상원	2016.2.26	· 부평농협 조합장	
8	"	강봉기	2016.5.24	· 전)송도테크노파크본부장	
9	"	정인수	2016.5.24	· 법사랑계양협의회 위원	
10	"	이형재	2017.3.21	· 전)김포양곡고 교감	
11	"	김경하	2017.3.21	· 인천급수 대표	
12	"	김원태	2017.3.21	· 사단법인 경인복지회이사	
13	"	신동인	2017.3.21	· 신동인치과의원 원장	
14	"	최승열	2017.3.21	· 광고나라 대표	
15	"	이강수	2017.3.21	· 유진디스크(주)대표	
16	"	박형배	2017.3.21	· 부광자동차공업사 대표	
17	"	정진석	2017.3.21	· 에이스침대계양점 대표	
18	"	손민호	2017.3.21	· 인천시의회 의원	
19	"	김경승	2018.2.21	· 해승유치원 대표	
20	"	정혜경	2018.2.21	· 한림병원 행정원장	
21	"	조희경	2019.2.20	· 국제산전 대표이사	
22	"	백하은	2019.2.20	· 카리스호텔 대표이사	
23	"	이병권	2019.7.16	· 계양농협 조합장	
24	감사	권이환	2012.2.28	· (주)금성피엔씨 대표	
25	"	이임효	2012.2.28	· 삼광산업대표	

문화원 동아리현황

【계양역사문화연구회】

- 창립일 : 2016. 12. 6.
- 회 장 : 임정선(전임: 이규상)/ 총무 최정순
- 회원수 : 16명
- 활동분야 : 향토사연구 및 역사문화 교육
- 모임시기: 매주월요일 오전 10~13시
- 회 비: 연10만원(문화원회비 3만원 포함)
- 주요활동
 - 2016. 9. 6~12. 6 계양큐레이터 양성교육 수료
 - " 12. 6 계양역사문화연구회 발족
 - 2018. 5. 3~7. 9 계양큐레이터 보수교육
 - " 9. 8 구민과함께하는 문화유적탐방(인천문화재단 공모)
 - " 10. 29 계양산국악제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운영
 - 2019. 3. 18 계양산 장사굴 추적 답사
 - " 4. 18~ 조선왕릉 학습 탐방(지속사업으로 진행 중)
 - " 4. 29~8.21 계양큐레이터 보수교육 참여
 - " 9. 21 계양평생학습한마당 참여(독립군체험 부스 운영)
 - " 12.3~12.19 계양큐레이터 보수교육 참여

【문화원 사진동아리】

- 창립일 : 2019. 1. 4
- 회 장 : 원대규 /총무 김윤희
- 회원수 : 29명
- 활동분야 : 사진동호회
- 모임시기 : 월1회(출사일 등 비정기 모임결정)
- 회 비: 연 2만원

○ 주요활동

- 2018. 8. 10~11. 30 디지털 카메라 사진반강좌 수강
- 2019. 1. 4 계양문화원 사진동아리반 발족
- " 5. 17~10. 4 디지털 카메라 사진강좌 심화교육수강
- " 6. 4 서운 체육공원 꽃마루 정기출사
- " 9. 27 계양구 작전동 재개발지역 현장
- " 10. 24~10. 30 제1회 문화원 사진동아리 전시회

【민들레문화봉사단】

- 창단일 : 2010. 12. 21(19.1.1~ 문화원 동아리활동)
- 단 장 : 박선영(전임: 김순옥)/ 회장: 배미자/ 총무 이향순
- 회원수 : 23명
- 활동분야 : 한국무용 공연 및 학습
- 모임시기 : 짝수월 첫째주 금요일/ 화,수,금 한국무용 강습
- 회 비: 월1만원
- 주요활동
 - 2011. 11. 30 제1회 정기공연 개최
 - 2012. 12. 27 한·중·일 문화교류 대만공연
 - 2013. 9. 28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인기상
 - 2014. 7. 20 전북 부안 추암전국국악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 2015. 9. 10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대회 대상 수상
 - 2016. 10. 3 전국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 대상 수상
 - 2017. 5. 2 인천시립요양원 봉사공연
 - 2018. 10. 6 제5회 정기공연 개최
 - 2019. 5.28~10.2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교육수강

[계양문학회]

- 창립일 : 2017. 9. 15
- 회 장 : 홍순덕(전임:김찬수)/ 총무 배순옥
- 회원수 : 12명
- 활동분야 : 시, 산문, 디카시 등 창작활동
- 모임시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6시30분경
- 회 비: 월 1만원
- 주요활동
 - 2019. 10. 24~10. 31 제1회 계양문학회 시화전
 - 2020. 1. 9 제2대 회장단 선출

[자연미 동호회]

- 창립일 : 2004. 7. 24
- 회 장 : 장양남(전임: 박갑수)/ 총무 정현숙
- 회원수 : 20명
- 활동분야 : 야생화, 분재
- 모임시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6시
- 회 비: 월2만원(입회비 12만원/ 6만원 교육비지원)
- 주요활동
 - 2017. 5. 18~5. 20 제1회 자연미동호회 작품전시회 개최
 - 2009. 5. 2 자연미 하우스 오픈
 - " 10. 5~10.10 계양구청 국화전시회 창조전시
 - 2013. 2. 설 명절 계양구청 녹지과 100만원 기탁
 - 2014. 9. 23 CJ방송 자연미 동호회 활동 인터뷰
 - 2019. 4. 24~4. 30 제13회 자연미 동호회 작품전시회 개최

【계양시민합창단】

- 창단일 : 2014. 1. 14
- 회 장 : 최돈옥 / 지휘자 한정훈 / 총무 이영화
- 회원수 : 20명
- 활동분야 : 합창
- 정기모임 : 매주화요일 오후8시~10시 /계산새마을금고 3층강당
- 회 비: 월 3만원
- 주요활동
 - 2015. 11. 제1회 가족과 함께하는 정기연주회 개최
 - 2016. 6. 계양구 토요일문화한마당 출연
 - " 11. 제2회 정기연주회 개최
 - 2017. 10. 계양예능동호회경연대회 축하공연
 - 2018. 6. 계양구 토요일문화한마당 출연
 - " 10. 21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
 - " 12. 1 「한마음합창단」 → 「계양시민합창단」 명칭변경

지방문화원진흥법(약칭: 지방문화원법)

[시행 2018. 11. 17] [법률 제1582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개정 2018. 10. 16.>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9조 삭제 <1999. 1. 21.>

제10조 삭제 <1999. 1. 21.>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 삭제 <1999. 1. 21.>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

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 삭제 <2002. 12. 18.>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7. 21., 2018. 10. 16.>

③ 삭제 <2011. 7. 21.>

④ 삭제 <2011. 7. 21.>

⑤ 삭제 <2011. 7. 21.>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제15824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설립인가 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②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

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 삭제 <1999. 3. 3.>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시설 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 삭제 <1999. 3. 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8조 삭제 <1997. 12. 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11조 삭제 <2009. 12. 22.>

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5.12.30조례 제506호

(일부개정) 2016.02.19 조례 제973호

(일부개정)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단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육성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3조(기금의 조성) ①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계양구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1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19.>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기금은 계양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지방채·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개정 2016.2.19.>
2. 그 밖의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2.19.>

③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임원·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원에서 추천하는 3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개정 2016.2.19.>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개정 2016.2.19.>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원 직원으로 한다.

제7조 <삭제 2016.2.1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2.19.>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원장이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및 보조금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및 보조금 운용계획
3. 기금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회계책임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원장
2. 기금출납원: 문화원 사무국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기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문화원장 및 관련 임직원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

제13조(회계관리) ①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 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수당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 및 문화원 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 3 장 사업비 보조

제17조(사업비 보조) ①구청장은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2.19.>

②구청장은 문화원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5조제3항에 따라 지출하는 전년도 운용수익·이자수익금이 다음 연도 예상기금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구청장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문화원장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문화원이 구청장의 보조를 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 4 장 그 밖의 지원 및 육성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6.2.19.>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

③구청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2.19.>

제2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지역문화행사, 향토 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교육 등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 회관, 기념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구청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
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3. 문화원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②문화원장은 제1항 각 호와 문화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2.19.>

③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2.19.>

제22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2.1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6.02.19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9.27 조례 제12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유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자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유산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지역의 문화유산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하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관광객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 자격) 해설사는 계양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선발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해설사에게 문화유산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활동 중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의 선발 해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유산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시 착용하는 활동복 지급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지급
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해설사의 선발 해제)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해제할 수 있다.

1.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해설사 스스로가 선발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문화유산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09.27.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해설사로 본다.

계양문화원 정관

제 정 2005. 12. 21
1차개정 2008. 2. 29
2차개정 2012. 7. 13
3차개정 2017. 2. 1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문화원의 명칭은 계양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계양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구립도서관운영사업, - 구립여성회관 운영사업. - 구립사회복지 운영사업
-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①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회원은 계양구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 (이하 “원장” 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본원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 한다.

제8조(회원의 관리) 회원자격 취득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의 임원선출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에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 서를 제출 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견책 : 회원에게 견책 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 주의 : 회원에게 주의 장을 발송한다.

④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입 원

제12조(임원) 본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2인
3. 이사 30인 이내(원장, 부원장, 포함)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을 포함하여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승인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출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4년, 감사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찬동 하고 협력한자로 구성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의 겸직할 수 없다.

제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 및 정당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사퇴)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 자격이 상

실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을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 날 자진사퇴한 것으로 한다.

④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2017.2.14)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원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운영위원 등) ①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원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

이내로 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로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 총회의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 결의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⑥ 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집특례) ① 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의 이사가 1/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 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다만, 해산,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 의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재 정(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

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사항을 광역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결산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0조(회계검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 본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원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2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3조(구성 등) ① 사무국에는 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③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 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7조(규칙 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 선임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원장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3.2)

계양문화원 회원관리 규정

제정 2017.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장의 규정에 의거 계양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원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원의 규정)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된 회원으로 하고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제4조(일반회원) ① 일반회원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② 일반회원은 본원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써 정관 제7조 절차에 따라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앞으로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일반회원은 정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제9조 의무를 가진다.

④ 일반회원의 가입승인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며 정관 제9조 연회비 납부 후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원 정관 제7조3항 및 제13조에 따라 거주지를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원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으로 한다.

제6조(준회원) ①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1. 문화강좌 수료생 등.
2. 일반회원으로 정관 제9조 제3호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제7조(회원의 자격제한) 일반회원이 전년도 연회비를 당해 연도 말일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정관 제8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8조의 권리를 가진다.

②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 개최시기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총회 의결권 가운데 임원선출의

건(선거권, 피선거권)은 회원가입 승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본원 운영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9조의 의무를 가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3. 연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10조(회원의 회비 등) ①회원의 연회비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일반회원 : 연 30,000원 이상
2. 임원(특별회원)

구분	원 장	부원장	이사, 감사
연회비	2,000,000원 이상	1,000,000원	500,000원

3. 문화원 회원 및 임원 등은 기타 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제반규정 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 본원의 회원은 본원 정관 제9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회비의 회계처리) 본원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문화원예산에 세입으로 관리하고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써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써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 회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혜택)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본원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각종 문화정보 제공
2. 본원 소장 각종 자료 열람
3. 본원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
4. 회원을 위한 문화 향수 및 소양개발 프로그램 참여
5. 본원의 회원으로서 포상
6. 기타 본원에서 주최하는 각종사업 및 행사 참여 등

제15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정관 제10조에 의거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1.18)